



오리 사육제한 법제화…오리협회 ‘유감’표명

AI방역친화형 사육시설 개편 등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 촉구

• • •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공포
오는 10월 1일부터 손실보상 제도화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리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을 법제화한 가운데 한국오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오리농가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과 근본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7일 오리 사육농가의 겨울철 사육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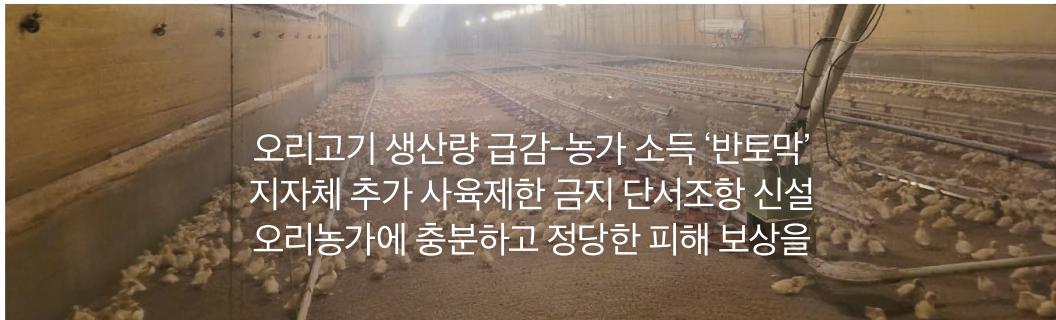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오리농가에 대해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육제한을 지시하는 경우 농가 피해손실액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는 이에 대해 겨울철 사육제한에 따른 오리산업의 피해대책과 AI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오리 사육제한을 법제화함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가 2017년 겨울,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원사업 형태로 6년째 실시해 온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앞으로 장관의 지시와 지자체 명령을 통해 의무화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오리산업은 매년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규제와 사육제한에 따라 오리고기 생산량과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리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AI 발생은 계속되고 있다”며 “AI발생 시 반경 10km 내 오리의 입식이 전면 금지되고 종란 반출금지(폐기)와 이동제한 해제 지연, AI 정밀검사 강화, 일제 입식·출하와 출하 후 14일간 입식제한 의무화, 오리





입식 전 검역본부 등 3~4단계 승인제도에 따른 입식 지연 등 엄청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연간 오리 도축마릿수는 2012년도 8,900만 마리에서 2021년도 4,900만마리로 4,000 만마리가 급감하고 오리농가 회전수와 소득도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따라서 오리협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AI 위험지역의 선정은 농식품부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각 지자체의 자체 예산을 활용한 추가적인 사육제한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향후 시행규칙에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돼지와 마찬가지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폐업보상 대상에 오리를 추가해 폐업을 희망하는 오리농가에 대해 폐업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사육밀도를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AI 예방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오리의 입식을 금지해 AI를 예방하려는 농식품부의 임시방편 대책으로 오리산업의 누적피해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지만 매년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최근 폭등한 오리고기 가격에 선량한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종료 시점을 정해 사육제한을 실시하되 종료시점까지 휴지기 보상재원을 활용해 오리 사육시설을 AI 방역친화형으로 개편하는 등 AI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리협회는 사육제한과 더불어 예찰지역 내 이동제한에 따른 오리농가의 입식금지 피해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부화장, 도축장의 피해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보상금 지급대상과 비용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줄 것과 AI 예찰지역 내 오리 조건부 입식허용, AI 비발생시기에 일제 입식·출하 의무 예외적용, 민간 자율비축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